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910
등록일자	2026. 1. 6.
결재일자	2026. 1. 6.
공개구분	비공개(5)

주무관	노인장애인팀장	사회복지과장
		전결 2026. 1. 6.
장혜린	박명진	윤동규
협조		

2026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계획



양 구 군
(사회복지과)

2026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계획

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
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
I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

II 지원개요

- 지원대상: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및 어르신 중
보장구 소유자
- 지원내용: 보장구 수리, 배터리 교체, 안전표시등 부착 등
- 사업예산: 금50,000천원(군비)

III 세부지원계획

- 지원금액(배터리 제외)
 - 저소득층(기초수급·차상위) 1인 연간 300천원
 - 일반 1인 연간 200천원
- 배터리 교체 지원 : 최대 300천원/인
 - 배터리 용량에 따라 지원 범위 내 실비 지원
 -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통합조사팀 배터리 교체 지원 금액(190천원)
외 차액 지원
 - 배터리 교체 내구연한 : 1년 6월(18개월)

*내구연한 미충족 시 자부담 수리

※ 모 단체 배터리 교체 비용 현황

45v	50v	62v
260,000	280,000	360,000

※ 출장비 별도

○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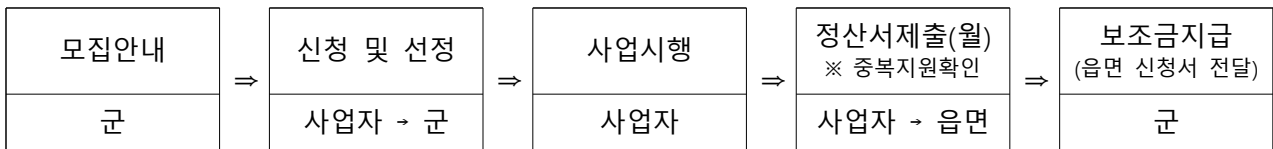
- 비영리단체 및 관내 민간사업자

단, 25년 기준 선정 단체 및 민간사업자 외 추가 선정 불가

※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, 민간업체의 건의에 따른 확대 추진

-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협약서(이행각서) 징구

○ 지원절차



IV 행정사항

- 모집 안내 및 사업자 선정: 1월 중
- 보장구 지원대장 관리 : 읍·면(*중복지원이 없도록 1년간 수리 내역 확인)
- 배터리 등 보장구 지원 시 내구연한 확인 철저
-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단체 별 비슷한 수준으로 유도

- 붙임 1.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참여 신청서 1부.
2. 양구군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협약서 1부. 끝.

[별지 1]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참여 신청서

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 참여 신청서

		접수 번호								
단 체 명 (업 체 명)			대표자명							
주 소										
사업자번호	연락처		전화 HP							
사업개요	- 사업계획 방안 작성									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안내										
<table><tr><th>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</th><th>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</th><th>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</th></tr><tr><td>이름, 연락처, 이메일, 소재지</td><td>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</td><td>제공된 개인정보는 목적달성 후 파기하며, 다른 법령 등의 보존기간(5년) 만료 즉시 파기함.</td></tr></table>					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	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	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이름, 연락처, 이메일, 소재지	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	제공된 개인정보는 목적달성 후 파기하며, 다른 법령 등의 보존기간(5년) 만료 즉시 파기함.
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	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	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							
이름, 연락처, 이메일, 소재지	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	제공된 개인정보는 목적달성 후 파기하며, 다른 법령 등의 보존기간(5년) 만료 즉시 파기함.								
※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-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거부할 경우 자원봉사 참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										
☐ 동의함		☐ 동의안함								
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										
2026년 월 일										
신청인: (인/서명)										
양구군수 귀하										
구비서류	1. 사업자등록증 2. 협약서(이행각서) *신청 시 작성									

[별지 2] 양구군 보장구 수리비지원에 관한 협약서

양구군 보장구 수리비지원에 관한 협약서

양구군수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는 _____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에 장애인 보장구 사후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.

제1조(협약 내용) 본 협약상 보장구 수리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

- ① 보장구(의료용스쿠터, 전동휠체어) 사후관리를 위한 수리비용 지원
- ② “을”이 소유하고 있는 보장구에 대한 무상기증에 대한 사항

제2조(협약기간) “갑”과 “을”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“을”의 보장구 소멸시까지로 정한다

제3조(사업내용) 본 협약상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에 내용을 다음과 같다.

-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간 보장구 수리비용 연간 30만원 차등지원
- ② 일반인 연간 보장구 수리비용 최대 20만원 지원
- ③ 배터리 무상교체비용 최대 30만원지원
- ④ 보장구 무상기증에 관한 사항

제4조(사업비 지급) “갑”은 “을”의 보장구수리비용에 대한 청구가 있을시 협약내용 제3조 사업내용에 의한 지원범위 내에서 보장구수리비용을 지원해야 한다.

제5조(“을”의 의무) “을”은 본 협약에 있어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 하였을시 “갑”의 보장구수리지원 받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.

- ① “을”이 보장구를 사용할수 없는 사항이 발생시 “갑”에게 무상기증 한다.

보장구를 사용할수 없는 사항이라 하면, 보장구 고장으로 사용이불가하거나, “을”이 사용할 수 없는 신체적 제한이 있을시 “을”의 동의를 받아 무상기증을 하며, “을”의 사망으로 동의를 받을수 없을시 “을”은 무상기증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- ② “을”이 협약체결이후 전출로 인한 주소이동시 협약내용을 모두 자동파기되며,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 “을”의 주소이전이 있을시 “갑”에게 지원받은 수리비용을 모두 반환해야한다.
- ③ “을”의 협약하여 등록된 보장구를 타인에게 이전하였거나 양도하였을 경우 “을”은 향후 5년간 “갑”과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협약을 할수 없으며, 또한 등록된 보장구 역시 지원을 중지한다.

제6조(해약) “갑” 또는 “을”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“갑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기간 중이라도 해약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7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.

제8조(협약서의 작성)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,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“갑” 양 구 군 수 (인)

“을” (인)

